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2211502호)	곽규택의원	2025. 7.16.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2143호)	김태선의원	2025. 8.12.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3287호)	조승환의원	2025. 9.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09.26.)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0.16.)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1.7.)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부대의견

가. 해양수산부는 향후 신규 채용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들에 대하여 조속히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

법률 제 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전하는 지역이 수준 높은 교통·복지·문화·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한다.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 받은 이전계획의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

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

정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 문화·체육·의료·상업·숙박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4.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5. 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요건, 지정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